

DeepSeek 규제의 GATS와 RCEP/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찬 모

*논문접수 : 2025. 10. 6. *심사개시 : 2025. 10. 22. *게재확정 : 2025. 11. 7.

〈목 차〉

I. 서론	6. 일반예외
II. 딥시크 규제의 사실관계	7. 안보예외
1. 주요 국가의 일반 동향	IV. 딥시크 규제의 RCEP 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검토
2. 한국 개인정보위의 조치	1. 전자상거래 장의 인공지능 관련성
3. 국제통상법상 쟁점	2. 컴퓨터시설 현지화 요건
III. 딥시크 규제의 GATS 합치성 검토	3. 데이터의 국외 이전 규제
1. 분류 문제	4. 제17장 예외와의 관계
2.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 규제와 인정	5. 사족
3. 시장접근	V. 결론
4. 내국민대우	참고문헌
5. 중국의 서비스 양허	

I. 서론

DeepSeek(딥시크)는 중국 「항저우 심도구색 인공지능 기초기술 연구 유한회사」¹⁾가 2024년 12월 버전-3을 발표한 인공지능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및 장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20S1A5C2A02093223).

1) 杭州深度求索人工智能基础技术研究有限公司(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Fundamental Technology Research Co., Ltd.). 이하에서 “딥시크”는 맥락에 따라 해당 서비스 또는 그 개발사를 지칭한다.

수출통제 가운데에서 챗GPT의 10분의 1 이하의 비용을 들이고도 그에 버금가는 고성능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²⁾ 이어서 2025년 1월에 발표된 추론 모델 DeepSeek-R1은 인간이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하는 방식 없이 기계적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만으로도 뛰어난 추론 성능에 도달하여,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기존의 접근에 혁신을 촉구하였다.³⁾

이와 같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덩시크는 한국, 미국, 호주, 이태리, 대만 등지에서 개인 정보보호 또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시적 다운로드 차단 또는 사용 제한에 봉착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경제·기술 문제를 정치·안보화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⁴⁾ 이 연구는 중국이 각국의 조치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검토한다. 다만, 중복을 피하고자 RCEP 합치성 검토에 있어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동 협정 제8장의 적용은 생략하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12장의 적용만을 검토한다.

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인공지능 환경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가 있으며⁵⁾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의 규제 권한 간 갈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⁶⁾ 이들 선행 연구가 다분히 이론

2) DeepSeek-V3 Technical Report. <https://arxiv.org/abs/2412.19437v1>. 비용추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Dylan Patel, AJ Kourabi, Doug, and Reyk Knuhtsen, “DeepSeek Debates: Chinese Leadership On Cost, True Training Cost, Closed Model Margin Impacts”, *SemiAnalysis*, Jan 31, 2025.

3) Will Knight, “DeepSeek’s New AI Model Sparks Shock, Awe, and Questions From US Competitors”, *WIRED*, Jan 28, 2025.

4) “中, ‘덱시크 중단’ 韓에 ‘경제·기술문제 정치화 않기를 희망’”, 연합뉴스, 2025.2.17; Taejun Kang, “China calls Australia’s DeepSeek ban ‘politicization of technological issues’”, *Radio Free Asia*, 2025.02.05.

5) Han-Wei Liu and Ching-Fu L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lobal Trade Governance: A Pluralist Agenda”,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61, 2020; Peng S, Lin C-F, Streinz T (e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Disruption, Regulation, and Reconfigu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김호철,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통상규범의 과제”,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3; 조수정, “국제통상법 시각에서 본 인공지능(AI) 규범 분석”,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3호, 2024.

6) 국내 문헌 몇 개만 언급하자면, 이재민, 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국가안보 예외 -,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 2020; 이한영·차성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 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안정민, “글로벌 디지털 통상과 개인 정보보호 - 현황과 과제 -”, *공법연구*, 제52집 제3호, 2024; 김종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하에서 데이

적 연구였음에 비해 본 논문은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한편, WTO에서 1998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선언⁷⁾으로 시작된 전자상거래 논의는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merce로 재점화되었으나 2023년 10월 핵심 이슈에 대한 미국의 입장 철회가 있었던 후, 2024년 7월 협상국 간 이견 없는 최대공약수를 담은 잠정 협정문안(stabilised text)⁸⁾을 채택하였다. 협정문안이 아직 법적 규범력이 없다고 보기에, 이 논문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제II장은 주요국의 덤시크 규제 현황을 일반 동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 약칭함)의 구체적 조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러한 규제 조치의 통상법적 쟁점을 도출한다. 제III장과 제IV장은 그 쟁점에 GATS와 RCEP 전자상거래 장의 규범을 차례로 적용하여 합치성을 평가한다. 제V장은 논의를 정리한다.

II. 덤시크에 대한 규제의 사실관계

1. 주요 국가의 일반 동향

2025.1.30.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GPDP)이 덤시크 차단을 시작했다. 동 기관은 덤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먼저 덤시크 측에 데이터 수집 방법, 저장 위치와 활용 목적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¹⁰⁾ 덤시크 측이 자신들은 이탈리아에서 영업하지 않으며 유럽연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GPDP는 GDPR상 투명성, 고지의무, 정보처

터의 국가 간 이전과 유통의 규율”,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3호, 2024; 이주형·오선영, “디지털 통상규범과 ‘안보’의 해석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24; 박주희, “인공지능 시대 국가안보 목적 개인정보 이전 제한의 디지털경제 규범 쟁점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69권 제4호, 2024.

7) Ministerial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DEC/2.

8) INF/ECOM/87.

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J L 119, 4.5.2016, 1-88.

10) GPDP, “AI: The Italian Data Protection Authority requests information from Deepseek”, 28 January 2025.

리의 적법성, 대리인 지정 의무, 규제 협조의무, 안전한 처리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¹¹⁾ 위반을 이유로 즉시 이탈리아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다.¹²⁾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의 다른 개인정보보호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¹³⁾

미국에서 전면적인 딥시크 차단은 없었지만, 개별 기관별로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해군은 2025.1. 장병들에게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국방부도 딥시크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미 의회 행정처 또한 딥시크가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원 의원 및 직원들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서버가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하는 딥시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사용을 금지했다. 텍사스, 버지니아, 뉴욕 등 일부 주정부도 공공기관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플랫폼(퍼플렉시티, 애스크 세이지 등)을 통한 간접 접근은 허용하고 있다.¹⁴⁾

아시아에서 대만 디지털부는 2025.1.31. 국가 정보 보안을 이유로 국가기관, 국영 기업과 공립학교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¹⁵⁾ 인도 등 몇몇 국가는 딥시크뿐만 아니라 챗 GPT를 포함한 모든 거대인공지능에 대하여 업무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¹⁶⁾ 한국은 후술하는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앞서 정부 기관들이 업무용 기기에 딥시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정부산하기관도 차단에 동참했다.

한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라인야후 등도 딥시크의 업무 목적 사용을 금지했다.¹⁷⁾

11) GDPR의 해당 조문은 제31, 12, 13, 14, 6, 32, 27조 및 제III장의 권리이다.

12) GPDP, Provvedimento del 30 gennaio 2025 [10098477].

13) 서혜림, “유럽, 中딥시크 바짝 경계…이탈리아는 사용 차단”, 연합뉴스, 2025.1.30.

14) 박정환, “미국, 국가안보 우려로 정부 기기서 ‘딥시크’ 사용금지 검토”, 글로벌이코노믹, 2025.3.10.

15) 권수현, “대만, ‘안보 우려’로 딥시크 이용금지…주요국도 유사 움직임”, 연합뉴스, 2025.2.1.

16) 유창엽, “인도 재무부, 직원들에 챗GPT·딥시크 사용 금지…‘보안 위험’”, 연합뉴스, 2025.2.5.

17) 정채희, “‘딥시크 접속 금지령’… 글로벌 기업·美 의회, 데이터 유출 우려에 차단”, 한경 BUSINESS, 2025.1.31; 이명환, “네이버·카카오·라인야후, ‘딥시크 사용 금지령’ 내렸다”, 아시아경제, 2025.2.5.

2. 한국 개인정보위의 조치

가. 초기 조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출시 직후인 2025.1.31.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처리와 관련해 질의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이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분석하고,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수행했다. 개인정보위는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 국민들의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¹⁸⁾

개인정보위는 초기 조사 결과 딥시크의 제3사업자와 통신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기에 딥시크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딥시크는 국내 대리인 지정(2.10.)에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외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2.14.).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 2.15. 18:00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였다.¹⁹⁾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어도 기존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딥시크의 웹사이트를 통한 접속도 가능했다.

나.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위가 2025.4.23. 심의·의결한 실태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⁰⁾

(1) 처리방침 관련

딥시크는 2025.1.15. 한국 앱 마켓에 출시하면서 중국어, 영어로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였고, 그 처리방침에서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책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딥시크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경과”, 보도참고자료, 2025.2.7.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키로”, 보도참고자료, 2025.2.17.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딥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5.4.24.

임자의 성명·연락처 등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키 입력 패턴·리듬과 같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점검과정에서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사항을 포함해 한국어로 된 처리방침과 별도의 대한민국 관할조항(처리의 법적 근거, 보유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을 추가해 제출(3.28.)하였고 웹·앱을 통해 공개할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된 키 입력 패턴은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고 실제 수집 항목으로 처리방침을 정비했다.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당초 딥시크는 개인정보를 중국 및 미국 소재 다수 회사로 이전하면서도, 서비스 개시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이를(또는 ‘국외 이전 사실을’)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았다. 딥시크는 기기 정보, 네트워크 정보, 앱 정보 및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Beijing Volcano(이하 ‘볼케이노’)란 회사에 전송하고 있었다.

점검 중에 딥시크는 국외 이전(위탁) 관련 법정 사항을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볼케이노로의 전송에 대해서는 보안 취약점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 등의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에 따라 신규 이전을 차단(4.10.~)했다.

(3) AI 개발·학습 관련

당초 딥시크는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개발·학습에 이용하고 있었으나, AI 프롬프트 입력 내용의 경우 이용자가 AI 개발·학습 활용에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 처리방침·이용약관에도 ‘서비스 제공개선’으로만 표시해 충분한 설명 또는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점검 중에 딥시크는 AI 프롬프트 입력 내용의 AI 개발·학습 활용과 관련해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기능(opt-out)을 마련(3.17.~)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가 2024.3. 주요 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후 권고한 ‘강화된 보호조치’²¹⁾를 모두 준수하기로 하였다.

21) 사전학습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노출 페이지

(4) 아동 개인정보 및 안전조치 관련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면서도 서비스 가입 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점점 중에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개발 서버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소홀, 디렉터리 리스팅 방지 미흡 등에 대해서도 점점 중에 조치가 완료되었다.

3. 국제통상법상 쟁점

2025.4.28. 딥시크는 개인정보정책을 보완한 후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재개하였다.²²⁾ 그러나 두어 달의 공백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에서 딥시크의 열기는 가라앉았다. 2025년 1월 1백만 명에 육박하던 월간 활성이용자수가 5월에는 다운로드 재개 이전보다 오히려 떨어져서 겨우 20만 명에 턱걸이하였다.²³⁾ 그동안 챗GPT는 ‘지브리 밈’ 열풍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월간 활성이용자수가 1천만을 넘어서며 시장을 지배했다.²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딥시크와 중국 정부는 친미 국가들이 중국의 최첨단 서비스에 대하여 관련 국제경제규범인 GATS와 RCEP에 반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가상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된다면, 먼저 딥시크가 제공하는 것이 통상협정상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서비스라고 한다면 서비스 양허의 어떤 서비스 항목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방식의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지 결정되어야 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실체규범 중에서 일반규정인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규제와 인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규제 국가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 약속과 해당 조치가 부합

지(URL)에 대한 삭제차단 반영, 이용자 입력 데이터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알리고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 보장, AI 관련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을 구체적으로 안내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3.28.

22) 이상서, “딥시크, 국내 신규 서비스 ‘재개’... 韓정부 시정권고 일부 수용”, 연합뉴스, 2025.4.28. 그러나 필자가 앱스토어로 검색한 2025.6.7에는 딥시크 앱이 검색되지 않다가 그 후 7.10에는 검색된 것으로 보아 재개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3) 이재은, “돌풍 잠잠해진 中 딥시크... 韓 이용자 감소·R1 반응 미지근한 이유는”, biz.chosun, 2025.6.9.

24) 주원규, “딥시크, 다운로드 재개 이전보다 인기 독... ‘월간 이용자 10만명’ 깨졌다”, 파이낸셜뉴스, 2025.6.6.

하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조치국이 일반예외 또는 안보예외를 원용하여 항변할 수 있는지 분석되어야 한다. RCEP 전자상거래 장에는 여기에 더하여 컴퓨터 설비의 위치 및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와도 합치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III. 덤시크 규제의 GATS 합치성 검토

1. 분류 문제

가. 상품/서비스 분류

인공지능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유체물의 형태를 띌 수도 있지만 덤시크, 챗GPT와 같이 소프트웨어로 내려 받거나 다운로드조차 필요 없이 접속을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휴머노이드나 디스켓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의 수출입에 대해서 관세 당국은 이를 상품의 수출입으로 다루어 왔다. 상품교역/서비스교역/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 WTO협정 체계에서 상품교역협정이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콘텐츠를 유체물에 저장되지 않고,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받거나 이도 필요 없이 직접 사이트에서 내려 받으면서 규제체계에 혼선이 생겼다. WTO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서비스 중 하나로 분류하여 GATT/GATS 중 어느 협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지리한 논의를 하다가²⁵⁾ 결국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미봉책이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반복되고 있다.²⁶⁾

실제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후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착용형 의료기기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가 혼합되어 제공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 GATT와 GATS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FTA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이분법의 한계와 적용상 곤란함을 ‘전자상거래’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해결하였으며 근년에는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과 같이 독자적인 협정으로 체결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²⁷⁾

25) Rolf H Weber and Mira Burri, *Classification of Services in the Digital Economy*, 2013.

26) 가장 최근인 2024년 3월에 열린 제13차 각료회의에서는 관세부과 유예를 차기 각료회의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했다.

27) 디지털 통상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로는 이재민,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 상품·서비스 교역 ‘일체화’

생각건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상품적 속성이 약화하고 접속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도 접속 과정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아이폰에 불과한 것이지 내려받은 앱이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논문의 주된 대상인 답시크는 상품이 아니고 서비스로 봄이 적절하며, 이에 대한 규제에는 WTO협정 중에서 GATS가 적용되고 RCEP과 같은 FTA협정 중에서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장과 전자상거래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²⁸⁾

서비스 교역체계 내에서 인공지능은 다시 어려운 분류 문제를 일으킨다. 1990년대 초반 GATS의 기초자들이 작성한 W/120²⁹⁾의 서비스 분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전 서비스영역을 포괄하고자 했다.³⁰⁾ WTO 회원이 어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을 양허하였으면 그 양허 약속은 원칙적으로 그 분야의 모든 서비스에 유효하다. 만약 양허 분야 중 일부 세부 분야를 미개방하거나 조건을 부과하고자 하면 양허표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그와 같은 기제가 없으면 해당 분야의 모든 서비스에 조건 없이 시장접근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³¹⁾

문제의 인공지능이 서비스 세분류 중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현재 다수의 학설과 실행은 사안별로 문제 된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존 서비스 분류 중 하나의 항목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³²⁾ 예컨대 인공지능으

의 통상협정에 대한 합의”,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8; 박동철 외 10인,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한국표준협회, 2021; 정찬모, “디지털 통상법의 형성과정과 특징 - 한국 관련 FTA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22.

28) 인공지능이 구현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기에 모든 인공지능은 서비스이며 전자상거래라는 일변화는 타당치 않다. 예컨대 가전에 일체화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은 상품으로 취급될 것이며, 무인 자동차와 같이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기능만 내재하고 복잡한 기능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게 한다면 이는 상품이자 서비스라고 할 것이고 법규도 GATT, GATS, 전자상거래 협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29) WTO Secretariat,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10 July 1991.

30)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US-Gambling*, DS285), Appellate Body Report adopted on 20 April 2005, para 180.

31)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290; WTO, “Guide to reading the GATS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and the list of article II (MFN) exemption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guide1_e.htm>.

32) Marta Soprana, “Compatibility of emerging AI regulation with GATS and TBT: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7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25, pp. 716-717; Ines Willemyns, “GATS Classification of Digital Services: Does the Cloud Have a Silver Lining?”, 53 *Journal of World Trade*, 2019, p. 76; 최혜선,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 법학논총, 제44권 제4호, 전남대 법학연

로 강화된 IT 백오피스 서비스는 서비스 분류의 대분류 중 컴퓨터서비스, 세분류 중 데이터처리/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물류, 회계, 재무, 인사, 교육, 법률, 의료 등 기존 서비스의 프론트 혹은 백오피스에 적용되는 경우 인공지능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기존 서비스의 분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딥시크의 각 이용자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딥시크를 이용할 것이나 각국의 조치가 내려진 당시에 딥시크가 특정 매체에 내장되어 제공되는 것도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규제 조치가 딥시크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내려졌으므로 조치의 대상이 된 딥시크 서비스는 W/120의 1.B.(컴퓨터서비스) 중 c.데이터처리/d.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고, 2.C(통신서비스) 중 j.온라인정보와 데이터베이스 검색/n.온라인정보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나. 서비스 모드 분류

GATS 협정에서 시장개방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4가지로 구분되는 서비스 제공 방식(속칭 “Mode”)별로 이루어진다.³³⁾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서비스가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의 지리적 이동 없이 네트워크를 타고 해외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것은 서비스 제공 방식 Mode 1에 해당한다. 개인전용 단말기 판매와 함께 온라인으로 해외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단말기는 상품 수출로, 서비스는 Mode 1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의 기술적 수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Mode나 양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회원 간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패널에 의해 판시되었다.³⁴⁾ 그러나 인공지능은 중

구소, 2024.

33) GATS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공급을 분류하여 정의하며, 이 순서대로 모드 번호로 칭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1.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
2.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공급
3.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4.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34) Progress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adopt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19 July 1999, WTO official document number S/L/74, 27 July 1999;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DS27), adopted on 22 May 1997, para 7.322; Panel Report, *US - Gambling*, para. 6.285; Panel Report, *China -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s. 7.1256-

전에 편지로 전달되던 서비스가, 팩스, 이메일로 대체되는 것과는 다른 변화를 초래한다. 종래 Mode 2, 3, 4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축소되고 Mode 1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원격의료로 타국에서 원격지 수술을 진행하면 종래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병원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어지고, 병원이 외국 현지에 분원을 낼 필요도 줄어들고, 의사가 수술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갈 필요도 줄어든다. 이와 같은 Mode 간 대체는 조약체결자가 예상하지 않은 것이다. Mode 1 방식의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종래 다른 Mode에 있던 규제를 우회할 수도 있지만, Mode 1에 제약이 많았다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제도적 제약이 가로막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들은 Mode 1, 3, 4에 대해서는 신중한 양허를 하였으나³⁵⁾ Mode 2에 대해서는 실질적 규제에 한계가 있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제한 없이 양허한 것이 대다수이다.

일반적으로 챗GPT나 딥시크 같은 국제적 인공지능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 누구도 국경을 넘지 않고 서비스만이 국경을 넘어서 제공되므로 Mode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은유적이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해외에 있는 인공지능에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Mode 2) 구성하고자 할 수도 있다.³⁶⁾ 후자의 경우 자유화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사업자 관점에서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이론 구성이다. 다만, 서비스공급자와 소비자의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한 현 분류 규정하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2.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 규제와 인정

GATS 제2부에 ‘일반적 의무 및 규율’로 규정된 최혜국대우(제2조), 투명성(제3조), 국내 규제(제6조), 인정(제7조) 등은 인공지능의 서비스 분류 문제와 무관하게 모든 WTO 회원국이 존중하여야 하는 원칙이다.

7.1258.

35) WTO, *Trading with intelligence*, 2024, 71-73.

36) Usman Ahmed & Penelope Naas, “ChatWTO: An Analysi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Trade, Global Future Council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White Paper at World Economic Forum, September 2024, 7.

가. 최혜국대우

세계화 시대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통합되던 국제경제였으나, 근년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정치적인 대립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대립 진영 간에 경제교류가 단절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있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화웨이를 배제하고³⁷⁾, 연방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며, 주요 공공기관이 답시크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첨단반도체 기술과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였다. 한국의 답시크에 대한 조치도 디커플링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조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제재의 대상이 되는 중국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와 다른 외국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와의 동종성 여부이다. 답시크와 동종서비스라면 챗GPT 등 다른 거대 인공지능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차별성 여부이다. 챗GPT와 관련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답시크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 개인정보위는 챗GPT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오픈AI사에 2023.7.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³⁸⁾ 1년 반 정도 시점의 차이가 있고, 규제 실시에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단정적 판단은 곤란하지만, 만약 답시크의 앱 다운로드 서비스 중단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된 것이라면 차별적이며 과한 규제였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면제 또는 예외의 적용 가능성이다. 미국의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에는 위성방송 부문에서 상호주의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³⁹⁾ 그러나 답시크는 방송 부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최혜국대우 면제는 10년을 한도로 했기 때문에⁴⁰⁾ 이 면

37) 인공지능은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작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인공지능 서비스 확장에 기반 요소가 될 것이다.

38) 개선 권고의 내용은 재발 방지대책 수립, 국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위의 사전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 등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오픈AI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보도자료, 2023. 7. 27.

39)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ist of Article II (MFN) Exemptions Supplement 2, GATS/EL/90/Suppl.2, 11 April 1997.

제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한국의 양허표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에도 이에 적용할 만한 사항이 없다.⁴¹⁾

나. 투명성

GATS의 투명성은 법령의 제·개정 과정과 결과가 대내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한국의 규제 투명성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딥시크의 앱 다운로드 서비스 중지가 소위 은밀한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개선될 필요가 있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게 되어있으나 긴급사항에 해당하는바 행여 구두에 의하였다 하여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다. 국내 규제와 인정

GATS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서비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

-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
- 다) 허가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 라) 구체적 약속을 할 당시 그 회원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방식

인공지능서비스의 분류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구체적 약속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규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근년 국내규제와 관련해서 GATS 제6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참조문서가 채택되었고⁴²⁾ 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를 자국의 서비스양허표에 추가적 약속으로 수용하였다.⁴³⁾ 회원국 국내규제가 GATS 의

40)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제6항.

41) KOREA, Final List of Article II (MFN) Exemptions, GATS/EL/48, 15 April 1994.

42) WTO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Reference Paper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INF/SDR/2, 26 November 2021.

43) 한국도 양허하였다.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Supplement 4, GATS/SC/48/Suppl.4, 16 May 2024.

무와 합치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⁴⁴⁾ 인공 지능과 관련해서는 ISO/IEC⁴⁵⁾에서 활발하게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⁴⁶⁾

딥시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전 면허를 요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딥시크에 대한 규제가 기술표준을 채택,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가 비면허산업의 비기술적 규제에 있어서도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개인정보위의 행위에 크게 문제되는 바는 없어 보인다.

3. 시장접근

GATS 제16조 제2항은 회원국이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기 나라의 양허표 상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나라의 일부 지역이나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 거래 총액, 지분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⁴⁷⁾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현재 회원국들이 인공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서비스 양허를 한 수준은 다양하다. 앞서 딥시크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언급한 컴퓨터서비스(데이터처리/데이터베이스)는 WTO의 84개 회원이 양허를 했다. 그다음으로 인접한 통신서비스 분

44) GATS, 제6조 제5항 나호.

45)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공동 기술위원회를 조직하여 작업하고 있다.

46) 상제 논의는 정찬모, “인공지능과 기술적 무역장벽 규범”, 법학연구, 인하대 법학연구소, 제27권 제2호, 2024, 277-310면.

47) 가. 수량쿼타,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타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라.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야의 양허는 100여 회원에 이른다.⁴⁸⁾ 그러나 서비스 양허의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⁴⁹⁾ 한국의⁵⁰⁾ WTO 서비스 양허표의 답시크 관련 부분은 아래에 W/120의 1.B. (컴퓨터서비스) 중 c.데이터처리/d.데이터베이스와 2.C(통신서비스) 중 j.온라인정보와 데이터베이스 검색/n.온라인정보와 데이터 처리 항목을 필자가 통합하여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Mode 1-3에 걸쳐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없다. 한국의 경우 추가적 약속에 기재한 사항은 모호하기는 하나 시장개방 항목의 Mode 3 혹은 수평적 양허의 조건으로 기재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미국 양허표의 관련분야 기재 사항>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1. BUSINESS SERVICES B.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a. ~ e. except airline computer reservation systems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1) None 2) None 3) None 4) None	
2. COMMUNICATION SERVICES C. TELECOMMUNICATIONS Enhanc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cludes the following: h. ~ o.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1) None 2) None 3) None 4) None	

<한국 양허표의 관련분야 기재 사항>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1. BUSINESS SERVICES B.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a. ~ e.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ALL SECTORS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ALL SECTORS	
2. COMMUNICATION SERVICES C. TELECOMMUNICATION	1) None 2) None	1) None 2) None	Registered, operating, value-added service

48) EU를 1로 계산한 것이다. WTO, *Trading with intelligence*, 2024, p. 70.

49)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90, 15 April 1994, 37, 45-46.

50)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10, 18-19.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SERVICES Value-added Services1, Including On-Line Data Base and Remote Computing Services2: h. ~ n.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ALL SECTOR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ALL SECTORS	providers are allowed to supply data transmission services3.

(원주 1, 2, 3 생략)

4. 내국민대우

GATS 제17조는 WTO 회원국이 자기 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하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 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한다.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라도 실질적으로 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미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어떤 제한도 기재하지 않았다. 딥시크와 같은 중국계 서비스를 한국이 네이버 클로바X, LG 엑사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다면 내국민대우 위반이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출시 이전부터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국내외 서비스를 차별 없이 신속하게 대응해 왔으므로⁵¹⁾ 내국민대우가 문제 될 소지는 적다고 할 것이다.

5. 중국의 서비스 양허

중국이 챗GPT나 클로바X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딥시크에 대한 규제는 상호주의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WTO나 FTA법적으로는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는다. 체약국들이 동일한 양허를 교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이 WTO 가입 후인 2002년 제출한 GATS 양허는 현시점에서 보면 대단히 보수적이다. 컴퓨터서비스와 관련해

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 3.28.

서는 d.(데이터베이스서비스) e.(기타 컴퓨터서비스)를 양허하지 않았으며⁵²⁾, 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지역적 제한을 두었고, 현재도 소유제한을 유지하고 있다.⁵³⁾ Mode 1에 대해서는 Mode 3를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Mode 3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만 양허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중국이 한국이나 서방의 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인터넷 만리장성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WTO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반대로 이와 같이 보수적 양허를 한 중국도 자신보다 개방 수위가 높은 한미가 양허를 위반하였다고 WTO분쟁해결 절차에서 따지기에는 정책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⁵⁴⁾

6. 일반예외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하여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⁵⁵⁾

한국 개인정보위가 그랬듯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일반인도 딥시크 이용을 자제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앱

52)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135, 14 February 2002, 10.

53) Ibid, 17-20.

54) RCEP의 서비스 양허는 한중 모두 미국의 WTO 양허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RCEP 부속서 II.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55) (영문) Article XIV 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c)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ii)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다운로드 중지를 권고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무시하기 어려운 중국과 한국의 법문화에서 덩시크의 사업에 사실상의 차별을 준 것으로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이라는 이의를 중국은 제기할 수 있다. GATS 제14조(c)(ii)가 명시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규의 준수 확보를 예외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목적해당성 차원에서는 정당화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단의 비례성을 포함한 필요성 원칙의 충족 여부, 자의적이거나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놓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⁵⁶⁾

이처럼 덩시크의 입장에서는 다운로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을 중용한 한국의 조치가 투명성 혹은 내국민대우 원칙을 반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제14조의 일반예외로 방어할 수 있다. 나아가 일반예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의문이 있더라도 현재는 덩시크의 한국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이 제거되었으므로 중국이 과거사를 가지고 한국을 WTO에 제소할 실익은 적다.

7. 안보예외

GATS 제14조의2(안보상의 예외)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 가. 공개시 자기나라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간주하는 어떠한 정보의 공개도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또는
- 나. 자기나라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원국이 간주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 (1)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 (3)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또는

앞선 일반예외와 비교하면 두문 요건이 없고, 본문도 회원국의 주권적 판단에 대한 존중을 주문하고 있다. 근년에 유행하는 “경제안보”, “안보통상”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56) Appellate Body Report, *US - Gambling*, para. 344; Panel Report,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para. 7.761. 등에서 보듯이 두문 요건의 통과가 의례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가의 무역조치를 안보상 예외 규정에 의해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취하는 고성능 반도체 수출금지, 인공지능 설계기술 수출금지 등을 미국은 안보 예외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조치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종래 미국은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보호주의라며 우려를 표시해 왔다.⁵⁸⁾ 인공지능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에 있기에, 적어도 우호 국가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에 기반한 개방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설계기술의 이전이나 미국기업에 의한 그들 인공지능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있어 자국 서비스 즉, ‘소버린(sovereign) AI’⁵⁹⁾를 육성하려는 것도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서 독립의 보루를 지키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공공기관과 그 직원의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에 인용한 제14조의2 제1항 가호를 근거로 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이다. 딥시크가 수집한 공공정보가 적대국의 정보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국방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전이나 서비스·투자 제한의 경우 가호 또는 나호(1)목에 의해서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3)목은 여러 판례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⁶⁰⁾ “국제관계상 긴 급상황”이라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1)목의 “또는 간접적으로”라는 문언은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이란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군사시설에 공급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57) *United States — Measures on Certain Semiconductor and other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and Technologies*, WT/DS615/8,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10 January 2025.

58) Nigel Cory and Patrick Grady, “The EU’s Approach to AI Standards Is Protectionist and Will Undermine Its AI Ambitions”, Center for Data Innovation, February 6, 2023; “European approach to AI turns to protectionism as the world recalculates in the face of ‘Brussels effect’”, <https://www.convergencialatina.com/>, September 11, 2024.

59) 박희만, “하정우 수석 ‘소버린 AI’ 전략 본격화…국가 주도 AI 생태계 구축 나서”, 서울이코노미뉴스, 2025.6.17; 김금보, “배경훈 장관 후보 ‘소버린 AI 없으면 외산 종속…내년 안에 만들어야’”, 뉴시스, 2025.7.14.

60) 정확히 말하자면 GATT의 대응하는 조항인 제XXI조 적용 사례. Panel Report, *Russia — Traffic in Transit* (DS512), 2019; Panel Report, *US —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DS564), 2022 (appealed).

답시크가 적절한 개인정보보호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취한 한국의 조치는 앞에서 살펴본 일반예외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기에 안보예외를 원용할 필요는 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만약 어떤 중국 정보서비스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상황⁶¹⁾, 또는 답시크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BYD 등 일련의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옵티콘에 의하여 한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즉 양의 질적 변환이 일어나서 개인정보 이전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정도라면 제 14조의2 제1항 가호 원용의 정당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⁶²⁾

IV. 답시크 규제의 RCEP 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검토

1. 전자상거래 장의 인공지능 관련성

전자상거래 장(제12장)을 포함한 RCEP의 어디에도 인공지능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장이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⁶³⁾, 챗GPT, 답시크와 같은 인공지능은 현재도 그 자체가 상업성을 갖는 서비스이고⁶⁴⁾ 향후 수익모델로 다양한 상거래와 결합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전자상거래 장은 답시크 규제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규정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컴퓨터시설 현지화 요건

RCEP 제12.14조는 컴퓨터설비의 위치와 관련한 당사국의 권한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답시크 규제당국이 컴퓨터시설 현지화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⁶⁵⁾ 규정의 구조는 다음 단락에서 인용하는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61) 미국 입장에서 틱톡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62)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로는 이재민, 전계 논문(2020); 박주희, 전계 논문(2024), 각 앞의 주 6).

63) 제12.3조 제1항.

64) 고급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기본서비스도 데이터 수집을 대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65) 상세 논의는 Chan-Mo Chung, “Data Localization: The Causes, Evolving International Regimes and Korean Practices”, *Journal of World Trade*, vol. 52, issue 2, 2018, 187-208.

제12.15조와 유사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당국의 딥시크에 대한 규제 실행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설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보주체 소재국의 규제 권한 행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소비된 AI 정책에 의하여 한국의 AI 클라우드와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나 혹시라도 외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오로지 한국의 규제에만 구속되는 AI를 생각했다면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3. 데이터의 국외 이전 규제

RCEP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2.15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대상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원주 13. 생략)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2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⁶⁶⁾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 나.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경 간 이동과 관련하여 제약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정보는 국가기밀⁶⁷⁾, 군사기밀⁶⁸⁾,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⁶⁹⁾, 영업비밀⁷⁰⁾, 개인정보⁷¹⁾ 등이다. 이상 정보에 대해서는 각

66) 이 조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이행의 필요성은 이행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확인한다(원주 14).

67)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형법 제98조, 제113조.

68) 군사기밀보호법

6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1)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법률에 따라 무단으로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딥시크에 대한 사용금지나 서비스 중단요구도 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내법상 의무와 금지는 위 인용한 RCEP 제12.1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외국 사업자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조 제2항이 요구하는 “전자적 수단”, “적용대상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이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자적 수단”요건은 쉽게 충족될 것이나 “적용대상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이란 요건은 그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중 모두 RCEP에서 딥시크와 관련한 분야의 서비스 양허에서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요건도 충족할 것이다. 그러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3항에 의한 국가의 규제 권한이 우위에 있으므로 RCEP 회원국은 광범위한 규제 재량을 갖는다. 제3항은 가호에서 공공정책 예외, 나호에서 안보 예외를 규정하는데 딥시크에 대한 규제는 공공정책 예외에 포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사례에서는 동호의 단서에 규정된 기준 즉,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수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것이다.⁷²⁾

딥시크 규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공공정책 예외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일 것을 예견한 것처럼⁷³⁾ RCEP은 제12.8조(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서 적극적으로 당사국이 국제기준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제1항),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표준, 원칙, 지침 그리고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제2항). 법인 또한 그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인터넷에 공표할 것이 장려된다(제4항).⁷⁴⁾ 규제 조화 없이 다양한 규제가 난립하는 경우 규제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정부 차원의 규제 조화와 사업자 차원의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⁷⁵⁾

한국 개인정보위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 제도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전문 기관에 의해

72)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는 이효영,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LPPO)’ 예외의 의미와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2021.

73) 이 이슈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로는 이동건, “디지털 무역과 개인정보 보호: 공공 컨트롤러 개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167호, 2025.

74) RCEP 제12.8조 제4항.

75) Shin-Yi Peng,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Era of Dataf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212-217.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인증하고⁷⁶⁾ 이를 국가 간에 상호인증하는 구조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의 기업인증 체제를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BPR)으로 확대하려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노력이 주목된다.⁷⁷⁾

4. 제17장 예외와의 관계

RCEP은 제17.12조(일반적 예외), 제17.13조(안보 예외)를 통하여 WTO의 관련 규정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⁷⁸⁾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제12.14조와 제12.15조 각 제3항 각호의 공공정책 예외, 안보예외와 제17장의 일반적 예외, 안보 예외가 중복이 문제된다. 제12.14조 제3항과 제12.15조 제3항의 구조가 일반적 예외에 연이어 안보 예외를 규정하는 오랜 조약 체결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아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는 ‘일반적 예외’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약 기초자들이 예외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는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라는 포괄적 용어를 고안해 내었으며⁷⁹⁾, 그와 함께 WTO 일반적 예외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해석 관행에서 벗어나서 필요성 판단에 있어 판단 주체는 이행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문언에⁸⁰⁾ 합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컴퓨터시설 현지화와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와 관련해서 제17.12조와 17.13조는 제12.14조와 12.15조의 해석을 위한 맥락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덤시크 규제 사례에 적용하자면 제12.15조 제3항 가호에 의해서 정당화되며 제17장의 적용에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76)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10여 년 전부터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7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Global CBPR) 인증 개시”, 보도자료, 2025.5.30.

78) 일반예외와 관련하여 진화적 해석으로 발전한 판례법을 수용하고(원주 5, 6) 안보예외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에 통신,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제17.13조 나호 3)목).

79) 필자가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는 부분적으로 WTO TBT협정 제2조가 “정당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s)을 일반 예외와 안보 예외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 데에 있다.

80) 조항 본문의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이라는 표현과 이에 대한 원주 12와 14).

5. 사족

전반적으로 RCEP은 그 전후로 서방 국가들이 채택한 다른 디지털 통상협정에 비하여 국가의 규제 권한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⁸¹⁾ 과거에 외국 사업자와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정보산업을 보호하고 정권의 안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국이 고집하였던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보수적인 규정들이 이제 덩시크와 같은 중국의 경쟁력 있는 데이터·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권의 안위가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할 것이기에 쉽게 중국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나, 부국을 위해서 흑묘백묘를 가리지 않던 중국 공산당의 신축적인 행보를 고려할 때 불현듯 중국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을 옹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통상협정문의 조문을 데이터의 자유 이동 보장을 보다 강화하며, 서비스 양허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각국의 양허 내용을 개선하는 등 여러 경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에서 미약하나마 보다 개방적인 데이터 정책으로의 전환 의향을 감지한다.

V. 결론

이 논문은 덩시크와 같은 외국의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 규제는 GATS의 의무 규정과 그 회원국의 양허에 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여 이에 반하여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국내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RCEP협정의 경우에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의 규제 권한을 넓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GATS 협정보다도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할 것이다.

WTO협정이 논의되던 1990년대 초반은 물론이고, 2012년에 협상이 개시되어 2019년에 협정문이 채택된 RCEP의 채택 시점에도 인공지능이 현재와 같이 범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지 않았기에 인공지능은 협상당사국의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인공지능 성장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통신, 컴퓨터 기술이 부상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81) 정찬모, 전계 논문(2022), 18-19.

러한 분야에 있어서 RCEP 협상을 형식적,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아세안이나 중국의 입장은 보수적이어서 국가의 규제 권한을 유보하고자 하였다.

10여 년간 네트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경쟁력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각종 인간형 로봇, 딥시크, 틱톡과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자국의 선도적 디지털 업체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에는 RCEP 전자상거래 장이 다소 미흡하다고 갈수록 느끼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오픈AI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보도자료, 2023. 7.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 3. 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딥시크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경과”, 보도참고자료, 2025. 2.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키로”, 보도참고자료, 2025. 2.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딥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5. 4.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Global CBPR) 인증 개시”, 보도자료, 2025. 5. 30.

곽동철 외 10인,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한국표준협회, 2021.

김종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하에서 데이터의 국가 간 이전과 유통의 규율”,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3호, 2024.

김호철,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통상규범의 과제”,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3.

박정환, “미국, 국가안보 우려로 정부 기기서 ‘딥시크’ 사용금지 검토”, 글로벌이코노믹, 2025. 3. 10.

박주희, “인공지능 시대 국가안보 목적 개인정보 이전 제한의 디지털경제 규범 쟁점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69권 제4호, 2024.

박희만, “하정우 수석 ‘소버린 AI’ 전략 본격화…국가 주도 AI 생태계 구축 나서”, 서울

이코노미뉴스, 2025. 6. 17.

안정민, “글로벌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보호 - 현황과 과제 -”, 공법연구, 제52집 제3호, 2024.

이동건, “디지털 무역과 개인정보 보호: 공공 컨트롤러 개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167호, 2025.

이명환, “네이버·카카오·라인야후, ‘딥시크 사용 금지령’ 내렸다”, 아시아경제, 2025. 2. 5.

이주형·오선영, “디지털 통상규범과 ‘안보’의 해석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24.

이재민, “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과 국가안보 예외 -”,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 2020.

이재민,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 상품·서비스 교역 ‘일체화’의 통상협정에 대한 함의”,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8.

이재은, “돌풍 잠잠해진 中 딥시크…韓 이용자 감소·R1 반응 미지근한 이유는”, biz-chosun, 2025. 6. 9.

이한영·차성민,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이효영,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의 의미와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2021.

정찬모, “디지털 통상법의 형성과정과 특징 - 한국 관련 FTA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22.

정찬모, “인공지능과 기술적 무역장벽 규범”,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24.

정채희, “‘딥시크 접속 금지령’… 글로벌 기업·美 의회, 데이터 유출 우려에 차단”, 한경BUSINESS, 2025. 1. 31.

조수정, “국제통상법 시각에서 본 인공지능(AI) 규범 분석”,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3호, 2024.

주원규, “딥시크, 다운로드 재개 이전보다 인기 폭…‘월간 이용자 10만 명’ 깨졌다”, 파이낸셜뉴스, 2025. 6. 6.

최혜선,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 『법학논총』 제44권 제4호, 전남대 법학연구소, 2024.

2. 외국문헌

Ahmed U & P Naas, “ChatWTO: An Analysi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Trade, Global Future Council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White Paper at World Economic Forum, September 2024.

CHIN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135, 14 February 2002.

Cory N and P Grady, “The EU’s Approach to AI Standards Is Protectionist and Will Undermine Its AI Ambitions”, Center for Data Innovation, February 6, 2023.

Chung C-M, “Data Localization: The Causes, Evolving International Regimes and Korean Practices”, 52 *Journal of World Trade*, 2018.

Dylan Patel, AJ Kourabi, Doug, and Reyk Knuhtsen, “DeepSeek Debates: Chinese Leadership On Cost, True Training Cost, Closed Model Margin Impacts”, *SemiAnalysis*, Jan 31, 2025.

GPDP, “AI: The Italian Data Protection Authority requests information from Deepseek”, 28 January 2025.

Kang T, “China calls Australia’s DeepSeek ban ‘politicization of technological issues’”, Radio Free Asia, 2025.02.05.

Knight W, “DeepSeek’s New AI Model Sparks Shock, Awe, and Questions From US Competitors”, WIRED, Jan 28, 2025.

-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 KOREA, Final List of Article II (MFN) Exemptions, GATS/EL/48, 15 April 1994.
-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Supplement 4, GATS/SC/48/Suppl. 4, 16 May 2024.
- Liu H-W and C-F L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lobal Trade Governance: A Pluralist Agenda”,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61, 2020.
- Peng S,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Era of Dataf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 Peng S, Lin C-F, Streinz T (e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Disruption, Regulation, and Reconfigu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Soprana M, “Compatibility of emerging AI regulation with GATS and TBT: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7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25.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90, 15 April 1994.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ist of Article II (MFN) Exemptions Supplement 2, GATS/EL/90/Suppl.2, 11 April 1997.
- Weber R H and M Burri, *Classification of Services in the Digital Economy*, 2013.
- Willems I, “GATS Classification of Digital Services: Does the Cloud Have a Silver Lining?”, *53 Journal of World Trade*, 2019.
- WTO, Progress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adopt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19 July 1999, WTO official document number S/L/74, 27 July 1999.
- WTO, *Trading with intelligence: How AI shapes and is shaped by international trade*, 2024.
- WTO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Reference Paper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INF/SDR/2, 26 November 2021.

WTO Secretariat,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10 July 1991.

3. WTO 사례

Argentina — 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DS453), Panel Report circulated 2015; Appellate Body Report adopted on 9 May 2016.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DS363), Panel Report adopted on 19 January 2010.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DS27), Panel Report adopted on 22 May 1997.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DS512), Panel Report adopted on 26 April 2019.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DS285), Panel Report circulated 2004; Appellate Body Report adopted on 20 April 2005.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DS564), Panel Report circulated on 9 December 2022 (appealed).

United States — Measures on Certain Semiconductor and other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and Technologies (DS615),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10 January 2025.

[국문초록]

DeepSeek 규제의 GATS와 RCEP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검토

정찬모

중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딥시크는 비용 대비 탁월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호주, 이태리, 대만 등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시적 다운로드 차단 또는 사용 제한에 봉착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딥시크에 대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전자상거래 장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논문은 딥시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당국의 규제가 GATS의 일반의무 또는 양허에 반하여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국내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RCEP협정의 경우에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의 규제 권한을 넓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GATS 협정보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

과거에 중국이 외국 사업자와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정보산업을 보호하고 정권의 안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던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보수적인 규정들이 중국의 경쟁력 있는 데이터·인공지능 업체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딥시크,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전자상거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Abstract]

Consistency of the DeepSeek Regulations with the GATS and RCEP

Chan-Mo Chung

DeepSeek, a Chines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hat shocked Silicon Valley with its high performance at low cost, has faced suspension orders on the download of its application from major app markets or use restrictions in Italy, Taiwan,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mong others, mostly due to weaknesses i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security concerns in some cas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se restrictions are consistent with obligations under the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and the Electronic Commerce Chapter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This paper argues that data protection authorities' regulations against DeepSeek can be justified under Article XIV (General Exceptions) of the GATS, even if such measures violate GATS general obligations or specific commitments. These regulations qualify as necessary measures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protecting individuals' privacy in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The RCEP E-Commerce Chapter provides broader regulatory authority and discretion for members to enforce measures necessary to achieve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making legal challenges less likely than under GATS.

The paper concludes that China's previously conservative stance on cross-border data transfers – initially adopted to protect its domestic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maintain regime stability – has now become a barrier to the global expansion of its increasingly competitive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terprises.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AI), DeepSeek, Personal Data Protection, GATS, RCEP, Electronic Commerce,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